

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9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(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비용부담금의 체납처분 조항) 신설에 따라 납부 기간을 조례에 반영 신설(안 제18조제2항)
- 나. 「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8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(안 제18조 제1항, 제2항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: 덧붙임

가. 예고 기간: 2025. 9. 11. ~2025. 9. 30.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

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공원녹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공원녹지과장 홍 영 택
	팀장 직위 · 성명	공원관리팀장 김 종 일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종 일 (031-790-503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부담금의 징수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부담금의 징수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81호, 2024. 12. 20., 타법개정]

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·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(이하 “진단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23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>

1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

2. 가로수의 옮겨심기

3. 가로수의 제거

4. 가로수의 가지치기

5.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2. 20.>

⑤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

⑥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, 진단조사의 방법·대상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